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1고단956 사기, 사기미수  
피 고 인 이A  
검 사 정수정  
변 호 인 변호사 강종률  
판 결 선 고 2011. 10. 18.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주식회사 ☆은행이 피해자 ★ 공업사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(부산지방법원 2003가합5842)에 대하여, 주식회사 ●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7억 3,600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(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7845), 2004. 1. 16.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7,309,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.

이에 대하여 ☆은행,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04. 11. 17.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[부산고등법원 2004나3949, 3956(참가) 판결],

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고하였다

그러나 주식회사 ●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☆은행이 이미 2001. 11. 29. 청구금액 2억 원의, ◇은행은 2002. 8. 30. 청구금액 180,355,487원의 각 채권가압류(부산지방법원 2001카단36212, 2002카단29944)를 해 둔 상태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었다. 이에 피고인, 피해자, ☆은행과 ◇은행은 2005. 1. 14. 위 승소금액 157,309,430원에서 소송비용 49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,359,430원 중 82,359,430원은 ☆은행이, 7,000만원은 ◇은행이 각 지급받고,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결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로써 ☆은행과 ◇은행의 위 가압류는 실현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, 이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.

## 1. 사기

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. 12. 22. 위 판결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47,481,44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,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. 12. 24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9626)을 받아 피해자의 각 은행예금 계좌를 압류한 후 2010. 1. 18.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(140-008-733063)에서 400,73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.

## 2. 사기미수

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강매경매를 신청하였고,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0. 1. 12. 피해자

소유의 부산 사하구 ◆동 ○○ 공장용지 15265.6㎡,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경매결정(부산지방법원 2010타경711)을 받아 채권 347,080,716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,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.

### 증거의 요지

1. 증인 윤C의 법정진술

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(이C1, 윤C 진술부분)

1. 임C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이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윤C 진술부분

1. 판결문 사본, 합의서, 각 영수증

1. 각 소송진행내역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, 각 부산지방법원 결정문, 부동산등기부 등본, 탄원서, 증거서류 추가 제출서, 이유보충서

1. 수사보고(수사기록 제102쪽)

### 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47조 제1항(사기의 점, 징역형 선택), 형법 제352조, 제347조 제1항(사기미수의 점, 징역형 선택)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 양형의 이유

법원을 기망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. 다만,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,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.

판사      주경태 \_\_\_\_\_